

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6. 9. 17.(목) 12:00
(지 면) 2026. 9. 18.(금) 조간

공무원 '난임 휴직' 운영기준 등 마련, 12월 시행

- 12월 3일부터 시행, 「공무원임용령」 및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입법예고 -

공무원 난임 휴직 제도가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.

이에 따라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 휴직이 아닌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,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할 수 있게 된다.

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와 인사혁신처(처장 최동석)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「공무원임용령」,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.

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라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한 난임 휴직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.

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사항 (‘26.6.2. 개정, 12.3. 시행 예정) 】

현 행	개 정
■ 난임치료를 위해 질병휴직(직권휴직)을 활용 ■ 휴직기간은 1년 이내 (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)	■ 난임치료를 위해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를 신설하여 난임휴직으로 활용 ■ 휴직기간은 1년 이내 (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)

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이 필요한 공무원은 그동안 질병 휴직을 활용해야 했지만, 법률 개정예에 따라 앞으로는 신설된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.

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‘난임으로 인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’를 하게 된 때에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구체화할 예정

이다.

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난임 휴직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. 다만, ‘특별한 사정’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이번 대통령령 개정에서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‘난임휴직 기간이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 이상인 경우’와 ‘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’로 구체화했다.

이 경우 인사권자는 관계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 난임 휴직의 필요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해 허가 여부 결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.

한편, 「국가공무원법」과 「지방공무원법」 시행일에 맞춰 인사처와 행안부는 「공무원 임용규칙»,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 등 행정규칙도 하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.

이를 통해, 휴직·복직 시 필요한 증빙서류와 휴직 중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의 휴직 사용을 보장하면서 휴직이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.

시행일 전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현행 규정에 따라 종전과 같이 질병 휴직 활용이 가능하다.

담당 부서	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	책임자	과 장	이은경 (044-201-8310)
		담당자	사무관	서지원 (044-201-8294)
담당 부서	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	책임자	과 장	이정석 (044-205-3341)
		담당자	사무관	김정민 (044-205-3347)